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10. 25.(목) 14: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58-477)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해선 인터넷윤리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인터넷윤리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주)위드디스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96조 및 제104조에 따른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현장점검 결과, <가> 점검 배경입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체 51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8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검결과, 8개사 중 7개사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주)위드디스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심인 조사결과입니다.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등록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이며, 위드디스크 사이트를 통해 영화, 드라마, 게임, 성인물 등을 유통시키는 웹하드 사업자입니다. 설립일은 '17년 11월 21일이고, 종업원 수는 8명이며, 매출액은 약 4억원가량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입니다. 피심인은 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를 서비스 개시 시점인 '18년 1월 17일부터 적용하다 같은 해 5월 3일부터 해제한 사실이 있으며,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방통위 현장점검 시 피심인이 제출한 필터링시스템 로그기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반사실 확인일부터 사후점검일까지 여전히 필터링 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불법음란정보임을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바, 피심인이 '18년 5월 3일 이후에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고 송수신을 차단하는 필터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피심인이 '18년 5월 3일부터 필터링 조치를 해제한 행위는 고의로 기술적

조치를 제거하여 무력화한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은 피심인의 의견입니다. 피심인은 의견제출기간 동안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 조치(안)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① 위반행위 즉시 중지, ② 음란물 자동차단(필터링) 적용 조치를 이행, ③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입니다. 과태료 부과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과태료를 같은 법 제10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기준금액은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어 700만원입니다. 다만, 위반 사항의 사실확인 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므로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하여 최종적으로 1,05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찰청 수사 의뢰 및 등록취소 요청입니다. 위반사항 점검 시 피심인에게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정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후점검일 현재까지 약 2개월간 계속하여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술적 조치를 해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본 안건 의결 후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사업자의 등록취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에 시정명령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방통위가 지난 5월 말부터 100일간에 걸쳐 불법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했지요?

○ 전해선 인터넷윤리팀장

- 예.

○ 허 옥 부위원장

- 대략적인 내용들은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 전해선 인터넷윤리팀장

- 100일 점검은 5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100일 정도 실시되었으며, 음란물 8,300여건을 즉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란물 외에 디지털 성범죄 추정 영상물에 대해서는 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유포자 330여개의 ID에 대해서는 경찰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그 부분과 함께 이 보고내용도 점검해서 적발한 것이지요?

○ 전혜선 인터넷윤리팀장

- 예.

○ 허 욱 부위원장

- 점검작업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집중점검은 방통위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 기획한 것입니다. 웹하드 사업자는 불법음란 정보를 인식하고 송수신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 임무입니다. 제가 지난 6월 12일에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웹하드 사업자들과 관련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웹하드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에서 필터링시스템 구축하고 유지·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그렇다면 정부가 함께 계속적으로 지능화되는 필터링에 관련된 기술개발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얼마든지 의견을 내라고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시된 안건의 피심인은 규제 당국이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이미 요구했는데도 두 달 후 사후점검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걷어냈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시정조치와 과태료의가중 부과는 물론, 경찰의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 그리고 과기정통부 소관이긴 하지만 등록취소까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처음이지요?

○ 전혜선 인터넷윤리팀장

- 예.

○ 허 욱 부위원장

- 웹하드 사업자가 자신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한 채 불법음란정보를 유통시켜서 돈을 받겠다는 행태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결 주문에 모두 찬성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중요한 사실은 앞서 부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피심인이 두 달간 적발되고 난 뒤에도 필터링 조치를 하지 않고 나 몰라라 방치하고 계속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심인 의견을 내라고 했더니 그것도 무시하고 내지 않고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것이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까? 과태료와 형사처벌 의뢰, 수사의뢰지요. 그다음에 사업등록을 전부 취소하도록 요청한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가장 강력한 조치를 이번에 위원회에서 시정조치로 건의드렸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런 것은 위반사항이 생길 때 반드시 과태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전해선 인터넷윤리팀장

- 지금 과징금 조항이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청소년들이나 우리 사회에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나 마찬가지로인데 이런 것을 죄의식도 없이 그냥 방치해 두고 나 몰라라 영업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징금을 매기는 조항이 없다면 그것까지도 앞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돈만 물고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배짱영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단속의지, 일벌백계를 무색케 합니다. 실제로 웹하드 영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하니까 돈 1,000만원 과태료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제를 정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앞에 두 분 말씀하셨으니까 음란물 유통은 굉장히 사회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초강력 처벌을 해야 그나마 근절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앞에 기술조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8개 사업자, 이것을 현장점검했더니 일곱 군데는 1개도 없었고 한 군데만 그렇다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8개가 그렇게 판단이 됐는데 실제 보니까 한 군데밖에 그러지 않았다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인터넷윤리팀장

- 저희가 전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는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할 때도 걸러지고 다운로드할 때도 걸러지는 것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가끔씩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의견입니다. 저희가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봤을 때는 전체 사업자들 중 8개 사업자들이 필터링이 잘 안 되는 부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로그기록 내용을 다 확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개 사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판단 되어서 1개 사업자만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아주 지엽적인 것인데 이것은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이 아니고 '의심되는'이

맞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표철수 상임위원

- 이것은 당연히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자들은 만에 하나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등록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사업을 다른 편법으로 또 하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근절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58-478~533)**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의결주문입니다.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2개월간 사실조사한 결과, 56개 유통점(대리점 12개, 판매점 44개)의 지원금 과다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배경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된 민원 중에서 현장조사가 필요한 75개 유통점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는 ‘18년 5월 11일부터 두 달간 사실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조회를 거쳤습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은 사실조사 과정에서 1개점이 추가되어 최종 76개점을 조사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56개점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15개점은 위반행위 미적발, 5개점은 영업장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6개 위반행위별 현황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금 과다 지급은 48개 유통점에서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금 미게시와 관련하여 1개 유통점이 이통사가 공시한 내용 및 추가 지원금을 영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고 단말장치를 판매하였습니다. 특정요금제 개별계약 관련하여 5개 유통점이 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가요금 등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인광고는 1개 유통점이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여 오인케 하였습니다. 사전승낙서 미게시 관련 1개 유통점이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고 판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 유통점은 사실조사 자체를 거부·방해하였습니다. 위법성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 과다 지급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금 미게시, 특정

요금제 개별계약, 오인광고, 사전승낙서 미게시, 조사 거부·방해 각각 법 제4조제6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시정조치(안)입니다.

첫째, 시정명령으로는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56개 유통점에 대해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사업장 공표를 명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과태료 부과입니다.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 3] 을 기준으로 가중 및 감경 방안을 적용하여 최종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가중 방안은 지난 14년 12월 4일 위원회 회의 이후에 지원금 과다 지급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 일률적으로 50%를 가중한 것을 이번 회의부터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처분의 형평성을 높이하고자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0%,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를 가중하는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경 방안은 '16년 9월 7일 이후 사실조사에 협조 시 일률적으로 50%를 감경하던 것을 법 시행이 4년 경과되어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점을 고려하여 감경혜택을 30%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금 과다 지급을 1회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하였고, 지원금 과다 지급을 3년간 2회 위반한 경우에는 기준금액 300만원을 가지고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미게시 개별계약 체결 제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오인광고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각각 기준금액 100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가 2건인 2개의 유통점에 대해서는 건별 기준금액 100만원을 합산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2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1회 위반한 기준금액 500만원, 2회 위반인 경우 기준금액 1,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6년도, '17년도에 이통사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이번 조사결과 이통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유통점별 행정처분사전통지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번 안건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민원 675건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법 위반 유통점을 기획조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점이기에 때문에 사무처의 적극 행정의 사례로 나올만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개인 민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접수된 민원을 정리하고 유형을 분석해서 방통위의 조사권과 결합하여 단말기 유통시장의 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을 보면 단말기유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반행위가 아직도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방통위가 이통 3사에 약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통점 끝단에서는 여전히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아쉽습니다. 따라서 원안의 의결주문에 동의하면서도 방통위 조사인력의 한계 때문에 상시 조사체제 구축이 어렵다면 법 위반사업자들에 대해 시행령상 제재수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위반행위 적발현황을 보면 아직도 지원금 과다 지급이 48개 유통점이 위반한 것입니다. 정말 일상화된 것 같아서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단속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 거부·방해 행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그냥 놔두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 대부분 과태료가 100만원, 150만원 정도 선에서 그치는데 뒤에 보니까 두드림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1,500만원으로 눈에 띄니다. 이것이 조사 거부·방해 행위를 해서 이렇게 매긴 것이지요?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3년간 2회 위반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1,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3년간 두 번이나 이런 조사 거부·방해를 했다는 것은 이 사업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준법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자는 조사 거부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아예 출입을 못 하게 하거나 현장에 들어가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PC 자체 전원을 차단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를 한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리고 또 한 군데가 500만원 과태료를 받았는데 거기도 조사 거부·행위가 한번 있어서 500만원이 된 것이지요? 이런 조사거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전원을 차단하고 접근을 못 하게 했습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그 경우에는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실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못 하게 하고 실제 주인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있던 PC를 던져서 파손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조사관이 갔는데 PC를 던져서 파손시켰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조사 거부·방해가 아닙니다. 조사하러 간 직원이 상당히 공포심도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회 위반이니까 500만원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어떻게 기물을 파손하고 그 당시 아주 위협적인 상황으로 몰고갔다는 이야기인데, 글썄 이것을 그냥 과태료만 매겨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단속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들어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조사 거부·방해와 관련해서는 대형사업자와 중소 유통점, 판매점을 구분해서 과태료를 차등하게 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 과다 지급 등은 1회 위반 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이 총 100만원인데 조사 거부·방해는 1회 위반하더라도 500만원입니다. 5배 이상 가중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운영해 보고 앞으로 개선 사항이 있으면 더 보강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가뜩이나 단속인력이 부족한데 그나마 현장에서 위협적인 상황까지 맞닥뜨린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보완해 나갈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련해서 조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지역사무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무소 운영과 맞추어서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잘 조사하셨고 오늘 새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 시 가중 방안, 감경 방안이 기존과 기준이 달라졌지요? 그것을 변경한 이유와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요.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가중 방안에서 그간 적용했던 것은 과다 지급건수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50%를 가중하고, 1건인 경우만 100만원 기준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2건 이상인 경우에도 위법 행위 간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위반금액 10만원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정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가중하되, 정도가 약한 부분은 가중 부분을 줄여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보완하는 취지가 있었고, 감경 방안도 사실조사 시 자료제출에 협조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해서 일률적으로 50%를 감경했었습니다. 그런데 단말기유통법이 4년 정도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료협조를 한다고 해서 계속 50%를 적용한다는 것도 법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감경 폭을 30%로 줄였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조사 제재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이런 기준도 이번에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단말기 유통법도 위반에 따른 제재수위에 대해 정확하게 변경하였고,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또 챙겨 봐야겠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 우리가 조사협조를 할 때 특히 위원님들께서 감경 부분 문제점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단말기유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좀 더 정확하게 조정했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위반 시 제재 하는 기준도 좀 더 엄격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으시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계획을 말씀하시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유출사고, 침해사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나 투자 소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망법에서는 현재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감경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경기준이나 가중기준을 좀 더 체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이동통신분야)」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이동통신분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이동통신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 사유는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및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 분야의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오늘 보고드리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이용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분석하여 거기에서 나왔던 주요 민원사례에 대한 해결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연구반을 구성해서 올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피해구제 연구반에는 방통위와 학계, 법조계, 그리고 소비자단체로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하였으며 통신사업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반에서 합의된 피해구제기준(안)에 대해 지난 10월 18일 저희 방통위와 이통3사, 그리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참여하여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구제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해서 가입, 이용, 해지 3단계에 12개의 분쟁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구비서류 및 해결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입단계입니다. 통신판매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계약의 청약철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경우, 정품셀이 미개봉된 미개통 단말기의 경우 7일 이내 이동전화 서비스 청약 철회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조사와 통신사 간의 책임 문제라든지 사용가치 감소에 따른 판단과 확인 절차 등 휴대전화 개통과정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통사 약관상의 휴대전화 구매 시에는 통화품질 외의 사유로는 반품이 불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된 피해구제기준에서는 이용자가 단순 변심한 경우에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포장이나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개통 또는 개봉 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전산상 개통 시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사업자들에게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와 관련해서는 이용요금이나 요금할인, 지원금 등 이동전화 서비스나 단말장치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이나 명의도용계약 등의 경우에는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를 구체화하고 피해구제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단계입니다. 이용 단계에서는 통화품질 불량에 경우에 가입 14일 이내와 가입 15일 이상 6개월 이내를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통화품질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제기할 경우에 사업자가 1회 측정하였던 것들을 저희가 이번 합의를 통해 이용자가 3회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신청서상 대리점 직원이 기재한 부가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청구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서비스 이용계약서나 전산시스템에 이용자의 부가서비스

신청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금액 전액을 환불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정액 가입 부가서비스 중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약관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금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표한 경우 미사용기간 동안 청구된 요금을 환불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올 10월 기준 SKT가 자녀안심서비스나 친구 찾기, 부가음성서비스 등 31개 부가서비스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T가 18개, LGU+ 91개 부가서비스에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자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 전환입니다. 이용자가 가입하였을 때는 무료였으나 추후에 유료로 전환된 경우라든지 유료 전환 사실을 이용자에게 분명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가서비스 계약을 취소하고 기 납부된 부가서비스 요금을 환불토록 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유료 전환은 약관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아주 작은 글씨로 적시하는 등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경우 유료전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에는 이용자 로그데이터와 사용량을 점검하는 등 과금 검증을 통해 요금산정 오류가 확인된 경우 과납요금을 환불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지 단계입니다.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관련서류 제출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면제토록 하였고, 특히 행방 불명자에 대해서는 종전 위약금 면제가 되지 않았으나 실종선고서 제출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지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해지와 같은 경우에 번호자원이 한번 해지 처리가 되면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해지 의사를 구두상으로 표시한 기간과 해지 절차가 완료되는 사이의 시점에서 과금과 관련해서 14일 동안 과금되지 않고 무과금 정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이동통신사만 전산 처리가 가능했지만 이번 연구반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까지도 이 제도를 같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지의사를 표시 하고 관련서류 제출을 완료하였으나 해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신청서 제출 완료일의 다음날부터 부과된 사용요금은 전액 환불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피해구제기준을 접수해 주시면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알뜰통신사의 경우에 전산개발이 완료 되는 '19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동통신 분야 외 초고속인터넷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손해배상이라든지 결합서비스 등 이번 피해구제기준에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전문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기준을 가입단계, 이용단계 그리고 해지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고 체계적으로 잘 마련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경과에 보고되어 있는 대로 지난 18일 이통 3사 그리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저희 방송 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주관을 맞이해서 오늘 보고된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 대한 협약

식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우선 협약식을 체결하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신서비스 민원사례를 분석해서 주로 다발 민원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석해서 정부와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사업자 등으로 이뤄진 관련된 연구반을 구성해서 맞춤형 피해구제안을 도출하고 협약식까지 마쳤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반 구성하고 또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 이용, 해지의 3단계에 따라 분쟁유형을 1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분쟁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나 사업자의 이용약관으로는 해결이 미흡했던 분쟁 유형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동시에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이용자들에게도 공평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수준 그리고 피해구제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가 접수되면 관련 내용들을 잘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통위도 홍보를 잘하고 특히 직접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이통 3사나 알뜰폰 사업자들이 동 내용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홍보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이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잘 해결되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이해하기 편하도록, 피해구제기준(안)에 가입 단계를 보면 통신판매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계약의 청약철회입니다. 종전에는 거의 대부분 다 환불이 잘 안 됐었는데 이것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경우 찢이 미개봉된 미개통 단말기의 경우에 한해서 청약 철회나 환불이 가능한 것이고, 유통점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개통이 됐으면 그것은 여전히 환불이 안 된다는 의미지요?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불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상으로 구매한 것은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대리점에서 구매한 경우 원래 14일 이내에 가능한데, 단지 사용가치가 훼손된 경우에는 환불권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개통과 관련해서 사용가치가 훼손된 것에 대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견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개통절차 중 어디 단계까지를 사용가치가 훼손된 것으로 보느냐는 부분들 때문에 대리점에 가서 개통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에서 개통처리를 하고 유심(USIM)을 끼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피해구제 기준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보고된 안전을 보면 이동통신 분야의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그리고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상당히 진전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제4기 방통위 슬로건이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정책구현”입니다. 오늘 보고된 안전이야말로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는 통신서비스의 종류나 이용자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특성 그리고 이용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보상기준이 필요한 때였는데 시의 적절하게 가입, 이용, 해지 단계 각각 맞춰서 분쟁의 유형을 정리하고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나 평가됩니다. 방통위가 적은 인력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여기에 제시된 피해구제기준 가운데 국민이 가장 불편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점검하고 분석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링을 할 때 보통 ‘킹핀(kingpin)’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핀 중 5번 핀을 주로 노리고 결국은 불을 굴려야 된다는 의미인데 국민들이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 어디이고 제일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어딘지 우리가 부족한 인력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때 우리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하고, 또 MOU를 맺었기 때문에 잘 지켜지리라 여겨지지만 이것이 이통사에 대한 기속력이 조금 약하지 않나 봅니다. 강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구제기준이 이용약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통사 입장에서 약관에 반영되면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통위 그리고 이통사가 좀 더 솔선하고 또는 개방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아울러서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분쟁조정 제도인데 이것이 도입되면 이번에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이유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방송광고 수수료)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방송광고 수수료)·제22의3(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 지급 범위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경과입니다. 2012년 5월 22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시 수탁수수료의 범위를 지상파는 13에서 16%, DMB에서 13에서 18%로 설정하였습니다. 2014년 2월 14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때 종편PP 승인일로부터 3년 후 적용이라는 종편PP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특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11조제1항제2호 종편PP의 미디어렐 대행에 따른 수탁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탁수수료는 15에서 19%로 설

정하였습니다. 2016년 9월 27일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수탁수수료를 13에서 19%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방송광고 위탁판매 절차에 있어 방송사업자별 차이가 없고, 수탁수수료 부과 정책의 일관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탁수수료 범위를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현행 수탁수수료에 대한 시행령 범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최근 4년간 수탁수수료 지급 비율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최소 비율을 14%, 최대 비율을 19%로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파의 경우 현행 시행령에서는 13에서 16%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4% 정도에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상파 DMB는 시행령상 13에서 18%까지지만 실제에서는 14% 정도로 시장에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합편성PP는 시행령상 15에서 19%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17.82에서 18.97%로 설정되었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이 모두를 통합하여 일괄 14에서 19%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4>번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말 행정예고 및 사전 규제 심사를 거치고 12월 초 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말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에 의결할 예정입니다. <붙임>에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안) 1부와 관련법령 1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 사안은 그 사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던 규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되겠지요.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방통위가 맡고 있는 업무에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비대칭 규제, 또 다른 말로 하면 비대칭 특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손질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런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작은 사업자들의 이익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건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동안은 지상파사업자다, 종편사업자다, 일반PP다 해서 차등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위협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면 물론 공영방송사와 민영방송사 간의 공적책무에 있어서의 차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상파방송이다, 종편이다, 또 유료PP다 해서 차등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 사업자군별로 차등 수탁수수료 비율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오랜만에 개정안을 일괄로 통일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담당 과장님께서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사업자들 의견수렴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혹시 들어오는 특이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아직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입법예고하면 새로 들어올 것이라서 그때 또 공식으로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회의를 통해 한번 의견수렴을 하긴 했는데 그 이외 공식적으로 다시 제출받는 것은 입법예고한 이후에 받아서 그것을 통해 의견수렴하고 다시 논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우리가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 시장에서는 매체사와 미디어렙 간 어떻게 하는 것이 광고판매에 효율적인가를 많은 부분 연구하고 질서가 새롭게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부 방송사 내부적으로는 경쟁을 격화시켜서 오히려 고정 비용 개념의 수탁수수료만 오르고 광고판매액은 정체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규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예를 들면 지금 지상파 14%가 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방송사와 미디어렙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 끝에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 의견을 여쭙았던 것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도 공영방송 같은 경우 코바코(KOBACO)라는 공영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고 있고, 또 SBS와 OBS를 포함한 지역민방들은 미디어크리에이트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편들은 1사 1렙의 특수관계자를 통해 광고를 판매하고 있고, 또 외주제작사들 같은 경우 협찬도 받고 있습니다만 또 광고에 관해서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나 하면 매체사 입장에서 수수료율이 낮다고 해서 꼭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수료가 높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니며, 이를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나 하면 매체사와 광고대행사, 미디어렙사 3사 간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등규제를 해소한다고 해서 이 시행령을 개정합니다만 자칫 사업자들 간에는 이런 환경을 또 처음으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잘잘한 분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행정예고하고 나중에 확정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이 시행되는 과정까지는 시장 내에서 그러한 잡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규제기관으로서 중재해야 할 것은 없는지, 또 살펴 봐야 될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입법예고기간 중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입법한 후에도 시장의 변화나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그리고 고삼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4년에 종편PP 미디어렙이 출범하면서 지상파

방송과 종편PP의 광고수수료 지급범위를 차별화하는 이른바 비대칭규제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종편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느냐는 인식이 굉장히 많고, 즉 광고수수료율이 높으면 광고대행사는 대행수수료가 높은 매체로 광고주를 유인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으니, 종편PP를 위한 특혜적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어떤 면에서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높으면 광고대행사와 미디어렙은 수익보전 관점에서 유리하겠지만 매체사인 종편PP는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편PP가 지상파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받아들인 것은 매체영향력이 낮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를 높여서라도 광고주를 유치하려는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수료 지급비율은 이미 광고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비율을 시행령에 반영해서 하단 14%에서 상단 19%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비율을 일원화하는 것이지요?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허 욱 부위원장

-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4년 이후 방송광고 시장의 흐름은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이 하락하고 있고 그만큼 종편PP의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수료 차등에 의한 경쟁열위 상황을 규제 차원에서 보전할 필요는 없어졌고, 위탁판매 절차에도 차이가 없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상파와 종편PP의 수수료 지급범위를 일원화할 시점이 되었고, 보고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수수료 지급범위가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최소와 최대 범위를 반영해 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안건은 시장 변화에 따라, 또 당사자들의 협상력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까 고 위원님 지적한 대로 방송사와 미디어렙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입니다. 특히 자체 미디어렙을 소유하지 못한 예를 들면 KBS나 MBC 같은 경우에 수수료 지급비율 상한을 인상하는 것에 관련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큼니다. 수수료 상한율을 높이면 렙사나 광고대행사는 수익보전이 가능한데 방송사는 수익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 1%, 2%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송광고시장 전부가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체 미디어렙을 보유하지 못한 방송사가 수수료 상한 증대로 인한 수입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관한 의견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렙사도 매체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를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결국은 시장에서 다른 경쟁렙사도 있고 경쟁매체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점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어쨌든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시장에서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이것이 일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또 일원화시키는데 찬성입니다. 이것을 진작 했어야 하고 신생 방송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따른 수익감소를 우려해서 초창기에는 약간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비대칭으로 지상파와는 다르게 수수료를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원화하는 것이 맞고, 다만 시장 예측을 해 보면 궁금한 것이 일단 지상파는 수수료를 14% 내고 종편들은 18%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동산 거래라고 비유를 든다면 이것이 일종의 복비 같은 성격인데 복비를 많이 주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팔겠지요. 오히려 수수료를 높임으로 해서 방송사 수익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광고가 더 많이 팔린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실제 수익 면에서는 꼭 손해만은 아니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시니까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일반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저희가 무슨 요인에 따라 많이 팔리는지는 정확히 규명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높으면 나에게 수수료가 많이 생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팔려는 경향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폭을 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원화시켰는데 지상파는 올리고 종편들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당장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체사 광고 쪽이나 랩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방통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더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랩사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미 연구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매체가 있고 경쟁랩이 있기 때문에, 특히 초기에 종편랩 처음 할 때는 일정 부분 활력을 주기 위해 높여 놓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종편들은 종편 간의 경쟁이 있고, 지상파와 종편 간의 일정 부분 같은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광고단가나 시청률 부분들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같은 지상파끼리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종편은 이미 최고액에 가까운 요율을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뜨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서 지원해 줄 것들은 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못 하겠네요.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일단 저희가 14에서 19%로 입법예고안을 낼 텐데 이에 대해서 사업자들 미디어랩사뿐만 아니고 방송사들의 의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대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최종 의결할 때 이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종편이 특혜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편이 거의 19%에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가 올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14%를 계속 유지한 것을 보면 이것을 레인지에 다 들어가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지상파가 여기에서 더 변동시키거나 또 종편이 확 내리거나 지상파가 확 올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상에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어났으려면 지상파가 벌써 올렸어야 하는데 이것이 관행이 있는 것이고 함부로 내리거나 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반응을 주시할 필요는 있겠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저작권 보유 합의가 있을 경우, 순수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순수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 부여는 고시 제11조제7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정비율 가중치 산정은 저작권 보유합의 유도 및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조항의 인정비율 가중치는 110%인데 이보다 높은 130%로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할 때 110% 동일하게 했었으나 실효성이나 균형성을 보고 판단할 경우 130%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현재 촬영원본에 대한 110% 인정이라든지 다른 사항을 예시했습니다. 다만, 인정비율 축소와 관련해서는 외주사의 저작권보유 합의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편성비율, 인정비율 축소는 「방송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위임의 한계 이탈의 문제가 있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일정은 접수해 주시면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이후에 위원회 의결과 관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에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순수외주제작 인정비율, 이 문제는 지난번에 표철수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먼저 의견을 주시지요. 기대에 미치는지 못 미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이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주제작사의 지위 내지는 실제적인 이익을 감안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보장해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 일부에서는 저작권을 서로 나누어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비율로 인정해 주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양쪽에 저희들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130% 인정해 주는 것도 부족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130% 보전해 주는 것은 상당히 진전된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외주제작사 그리고 외주제작 시장 현실에 관련된 이해도가 아주 높으신 존경하는 표철수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적과 또 내용 개선으로 인해 인정비율 가중치가 130%로 높아진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규정, 또 고시와의 균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150%까지 높일 수는 없고 130%로 산정되어서 고시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크리라고 여겨집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10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37분 폐회 】